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38,817,332	34,164,520
일반회계	1,063,415,981	31,902,479
특별회계	75,401,351	2,262,041
공기업특별회계	70,956,907	2,128,70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118,657	1,203,56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838,250	925,148
기타특별회계	4,444,444	133,33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662,540	79,876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457,744	43,73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4,160	9,72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2년 재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2년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645,97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6,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